

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재난 등 상황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재판장등이 기일 외에서 당사자와 제7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0조제5항)
- 재판장등이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(안 제70조제6항 신설)

4.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5항 중 “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”를 “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재판장등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. 이 경우 제95조의2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0조(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) ① ~ ④ (생략) ⑤ 재판장등은 기일을 열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양 쪽 당사자와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<u>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</u>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70조(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 <u>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</u> ----- -----. ⑥ <u>재판장등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. 이 경우 제95조의2를 준용한다.</u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	
연락처	(02) 3480 - 1820